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년월일 : 1996.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1997년도에도 전국공동으로 발행하고자 함.

주요골자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규모 : 2,400억원
- 발행형식 및 발행액
 - 즉석식 : 1,200억원(매월 100억원)
 - 추첨식 : 1,200억원(매주 24억원)
- 발행기간 : '97. 1. 1 ~ 12. 31

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 복권발행조정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247호)
-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585호)

복권발행계획서('97년도)

1. 합계

(단위:백만원,백만매)

지방자치 단체명	발행액	발행매수	발행기간	예상판매액	예상수익금
충청북도	240,000	480	'97.1.1~12.31	192,000	54,720

2.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발행 형태	발행기간	발행 회차	액면 금액	발행 매수	발행액	예상 판매액	예상 수익금
계				480	240,000	192,000	54,720
추첨식	97.1.1~12.31	50	500원	240	120,000	96,000	27,360
즉석식	"	12	500원	240	120,000	96,000	27,360

3.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 판매지역 : 전 국
- 최고 당첨금
 - 추첨식 : 1억5천만원
 - 즉석식 : 1천만원
- 수익금 배분
 - 협의회규정 제5조에 의거 판매수익금이 일정액(1,000억원)에 달할때까지 기금으로 적립

관련 法令(발췌)

●地方財政法 [1988. 4. 6 法律第4006號全文改正]

第11條의2(地方自治團體의 福券發行등) ①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福祉 向上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과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의 財源에 充당하기 위하여 福券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定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福券의 當籤金의 消滅時效는 支給日부터 3月로 하고, 消滅時效가 완성된 當籤金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 規制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福券發行調整委員會規程 [1991. 2. 27 國무총리훈령제247호]

第1條(目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發行하는 福券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福券發行調整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機能) ①委員會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調整한다.

1. 각 中央行政機關이 承認하는 各種 福券의 發行規模, 發行方法, 당첨금 구조등 福券發行에 관한 주요사항
2. 地方自治團體가 發行하는 福券에 관한 사항
3. 其他 福券關聯制度의 改善에 관한 사항

②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福券發行을 承認 또는 福券을 發行하기 1個月前에 福券發行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3條(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3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國務總理行政調整室 第2行政調整官이 되고, 委員은 財政經濟院 金融政策審議官 內務部 地方財政經濟局長, 通商産業部 中小企業局長, 建設交通部 住宅都市局長, 文化體育部 國際體育局長, 勞動部 勤勞基準局長,

科學技術處 技術振興局長, 行政調整室 審議官中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와 其他 委員長이 委囑하는 者가 된다.

第4條(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事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任命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會議)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②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議長은 議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6條(幹事) ①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1인을 둔다.

②委員會의 幹事는 行政調整室 職員中 委員長이 指名하는 자가 된다.

第7條(會議結果通報 및 施行)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結果를 關係機關에 通報하고 通報를 받은 關係機關은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第8條(關係機關등에 協調要請) 委員會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關係 專門家등을 會議에 出席하게 하여 意見を 듣거나, 關係機關·團體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 및 意見의 提出등 協調를 要請할 수 있다.

第9條(手當등) 委員會의 公務員이 아닌 委員과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하는 公務員이 아닌 關係專門家등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第10條(運營細則) 이 령에 規定한 것외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

附 則

이 訓令은 發令한 날 부터 施行한다.

1993. 3. 3.
●지방자치부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585호]

제 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권발행에 대한 승인기준과 그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부권발행의 승인기준)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권발행에 대한 승인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 3조(부권발행의 승인절차)①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권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9월20일까지(다만,행사기념 부권중 전년도에 부권발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부권의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6월전까지)부권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권발행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부권판매수익금의 사용계획서
3. 최근2년간 부권의 월별판매실적(2년이상 부권을 발행한 실적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부권발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서 사본
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서 사본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권발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부권발행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전국자치부권의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행사기념 부권의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全國自治福券發行 行政協議會 規約

(忠清北道 告示 第 1995-36號. '95.4.7)

第 1條(目的)이規約은 地方自治法 第142條 및 地方自治福券發行承認 基準등에 關한 規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全國自治福券發行을 위한 行政協議會의 構成과 그 組織 및 運營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條(協議會의 名稱)協議會는 全國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이하"協議會"라 한다)라고 한다.

第 3條(事務所의 位置)協議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麻浦區 孔德洞 234의2 番地 所在 社團法人 韓國地方財政共濟會(이하"共濟會"라 한다)에 둔다

第 4條(構成)協議會는 自治團體法 第2條의 規程에 의한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 로 구성한다.

第 5條(組織)①協議會의 委員은 協議會를 構成하는 地方自治團體의 企劃管理室長으로 하고, 任員으로 會長 1人, 副會長 1人 및 監事 1人을 두되, 會長 및 副會長은 各各 委員中에서 互選하고, 監事は 會長과 副會長이 所屬되지 아니한 地方自治團體 公務員中에서 會長이 指名한다

②會長, 副會長 및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되 任期中에 委員資格을 喪失하였을때는 所屬 地方自治團體의 後任者가 前任者의 殘任期間을 承繼한다

③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을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④會長이 有故가 있을때에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監事は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의 會計處理 및 第 7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가 共濟會에 委託한 事務의 處理狀況을 監査한다

⑥協議會와 實務協議會의 會計 및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 1人과 職員을 둔다

第 6條(實務協議會)①協議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協議會를 構成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擔當官 또는 投資審査擔當官으로 實務協議會를 構成 運營한다

②實務協議會의 委員長(이하 "實務委員長"이라 한다)은 會長이 所屬된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擔當官 또는 投資審査擔當官으로 한다

③實務協議會는 協議會 上程案件에 對한 事前 檢討와 第 7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가 委任한 事項을 處理한다

第 7條(機能)①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協議·決定한다.

1. 福券發行關聯事務의 代行機關選定 및 委託契約締結에 關한 事項
2. 全國自治福券 販賣收益金の 管理 및 地方自治團體間 配分등에 關한 事項
3. 福券의 販賣 및 弘報에 關한 事項
4. 其他 全國自治福券 發行 및 事務管理등에 必要한 事項

②協議會는 效率的인 事務處理를 위하여 第1項 各號의 事項을 實務協議會에 委任하거나, 第2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共濟會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第 8條(會議)①協議會의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②定期會議는 每年 上半期와 下半期에 各各 1回 召集하고, 臨時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委員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때에 召集한다.

③實務協議會는 會長 또는 實務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實務委員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때에 召集한다.

④內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協議會 또는 實務協議會의 開催를 勸告할 수 있다.

⑤會長은 協議會開催後 14日 以內에 開催結果를 內務部長官에게, 實務委員長은 協議會의 上程案件에 對한 事前檢討意見과 協議會가 委任한 事項에 對한 處理結果를 協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9條(協議方法등)①協議會에 上程된 案件에 對한 合議는 協議會 또는 實務協議會 構成委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會長 또는 實務委員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監事는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다만, 議決에는 參加할 수 없다.

第10條(未合議事項 調整등)①協議會에서 2回以上 協議하여도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協議會의 調整要求가 있을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②協議會를 構成한 關係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事項이나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內務部長官이 調整한 事項에 對하여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第11條(收益金の 管理運營 및 配分)① 全國自治福券 販賣收益金の 管理運營과 地方自治團體別 配分은 協議會가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販賣收益金を 配分하고자 할 境遇에는 福券販賣額 市郡區數, 人口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行事紀念福券을 當該行事와 關聯된 地方自治團體와 共同으로 發行하는 境遇의 販賣收益金の 配分은 發行關聯 地方自治團體間의 合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第12條(事務處理등)①協議會 및 實務協議會는 會議錄을 作成·管理하여야 한다

②協議會 및 實務協議會는 事務處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 關係公務員의 參席 및 意見開陳을 要請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要請을 받은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3條(財務會計등)①協議會 및 實務協議會 運營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經費는 協議會를 構成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가 共同으로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協議會에서 따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할 수 있다.

②會長은 會計事務處理와 全國自治福券發行 事務處理에 圓滑을 기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別途로 公務員을 任命하거나 參與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要請을 받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④協議會 및 實務協議會의 會計事務處理狀況은 每年 첫번째 會議時 幹事가 報告하여 協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4條(規約 改正)이 規約의 改正은 協議會 委員 過半數의 發議와 委員의 3分の 2以上の 贊成으로 한다.

第15條(補則)이 規約에 規定된 事項以外에 協議會 運營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協議會에서 따로 定할 수 있다.

附 則

이 規約은 告示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全國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 規程

第1條(目的) 이 규정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適用)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第3條(委任·委託事務의 範圍) ① 전국자치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발행업무중 일부를 규약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실무협의회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위임·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무협의회에의 위임 사무

- 가. 대행계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 나.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 다.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복권발행 및 사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의 위탁사무

- 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운영등

- 나. 협의회 결정사항의 집행 및 기록유지
- 다. 복권발행 대행기관의 지도감독
- 라. 내무부·지방자치단체·대행기관간의 업무협이 및 조정
- 마. 복권판매 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업무 대행, 협의회의 자금출납, 예·결산업무 등
- 바. 기타복권발행 및 관리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위탁하는 업무

第4條(幹事 및 職員) 협의회는 간사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복권발행관련사무를 공제회에 위탁한 때에는 공제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第5條(收益金の 管理) ① 전국자치복권의 판매수익금은 일정액에 달할 때까지 이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의 규모는 복권판매수익금 및 그 이자수익금등을 포함하여 1,000억원이내로 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로 적립기금의 규모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③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금전신탁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매입
3.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방법

第6條(收益金の 配分) 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기금목표액에 달한 경우에는 적립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권판매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은 규약 제 11조 제2항의 배분기준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2회이상 협의하여도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규약 제10조 제 1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第7條(運營經費等) ① 협의회 규약 제13조 제1항의 복권발행관련 사무의 처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무비는 복권판매수익금 또는 발행비로 충당한다.

② 협의회는 복권발행관련사무를 공제회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제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第8條(旅費等) 협의회 규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또는 위원등이 복권관련사무의 처리 또는 조사연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 또는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第9條(會計年度) 협의회회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2월말일에 종료한다.

第10條(豫算 및 決算) ① 간사는 매회계년도의 총세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으로 편성하여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간사는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

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11條(기타 會計處理) 협의회에 재무에 관해서는 규약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第12條(諮問委員會) ① 협의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에게 복권발행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附 則 -

第1條(施行日)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규정의 시행전에 처리한 협의회 운영 및 위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